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13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86명 → 1,591명(5명 증)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292명 → 1,297명(5명 증)

· 6급이하 : 1,204명 → 1,209명(5명 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안에 반영(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영)

(1)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150,000천원 정도(국비 70%지원)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86명”을 “1,5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58명”을 “1,56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91	1,59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97	1,297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209	1,209					
별정직 계	13	13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13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44	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5명 2. (생략)								제2조 (정원의 총수) ----- 1,591명-----. 1. ----- : 1,56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별표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출장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출장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급별									직급별								
총 계		1,586	1,586						총 계		1,591	1,591					
:									:								
일 반 직	소 계	1,292	1,292						일 반 직	소 계	1,297	1,297					
	:							:									
	6급이하	1,204	1,204							6급이하	1,209	1,209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 5명을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기본방안(2011.11.9)」에 따른 신규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와 호봉승급 1.4%를 합산한 4.2%를 적용하여 추계하기로 한다.

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105,000	109,410	114,005	118,793	123,783	570,991
	소계(a)	105,000	109,410	114,005	118,793	123,783	570,991
세출	인건비	150,000	156,300	162,864	169,704	176,832	815,702
	소계(b)	150,000	156,300	162,864	169,704	176,832	815,702
□ 총 비용(a-b)		-45,000	-46,890	-48,859	-50,911	-53,049	-244,71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105,000	109,410	114,005	118,793	123,783	570,991
도 비						
시 비	45,000	46,890	48,859	50,911	53,049	244,711
민 간						
기 타						
합 계	150,000	156,300	162,864	169,704	176,832	815,702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장정수
연락처	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5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인건비 기준은 「12년 총액인건비 산정기본방안」에 따라 30,000천원으로 하고 매년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2.8%와 호봉승급분 1.4%를 합산한 4.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매년 70% 국비가 지원된다.

가. 사회복지직 5명 증원 : 30,000천원 × 5명 = 150,000천원

※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기준 70% 국비지원